

# 「스타트업-인재 매칭 지원사업」 협약서

- 과제명 : 2017년도 스타트업-인재 매칭 지원사업
- 협약기간 :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(12개월)
- 총 사업비 : 지원금 180,000,000원(일금일억팔천만원정)
- 협약당사자

(전담기관) 서울산업진흥원(대표이사 주형철)

(주관기관) 주관기관명 오이씨랩 주식회사 기관장 성명 : 장영화

과제책임자 소속 : 오이씨랩 주식회사 직위 : 대표 성명 : 장영화

위 2017년도 '스타트업-인재 매칭 지원사업' 사업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사업의 목표 및 내용)

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된 '2017년도 스타트업-인재 매칭 지원사업 계획서'(이하 "사업계획서"라 한다)와 '2017년도 스타트업 인재 매칭 공모사업 공고문에 공지한 내용' 및 '2017년 스타트업-인재 매칭 지원사업 수정·보완 사업계획서 제출안내(일자리화산팀-280, 2017.3.23.)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수정·보완 요구사항'에 따른다.

## 제2조(용어의 정의)

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'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'(이하 '관리규정'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3조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

- ① 본 협약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및 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주관기관은 전 사업과정에서 (전담기관)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내용에 관하여 (전담기관)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서울특별시, (전담기관)에게 제출할 자료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## 제4조(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)

- ① (전담기관)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  - 가. 사업비 중 지원금의 지급
  - 나. 주관기관이 주관하는 과제에 대한 수시평가·최종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 각종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
  - 다. 주관기관의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
  - 라. 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
  - 마. 그밖에 '가'호부터 '라'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, 기타 관리규정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
-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- 가.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
  - 나. 주관기관이 출자하기로 한 민간부담현금의 부담
  - 다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,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
  - 라.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
  - 마. 수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
  - 바. 사업 추진실적 보고,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
  - 사. 수행과제의 보안관리
  - 아. 교육공간, 기자재 재료 활용·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
  - 자.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(전담기관)에게 통보
- ③ 주관기관은 (전담기관) 또는 (전담기관)이 지정하는 자가 과제의 성과 및 참여기업 및 참가자 등의 정보수집·활용을 위한 요청에 동의·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주관기관은 사업수행기간 중 기수별로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 관리에 적절히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(지원금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)

- ① (전담기관)은 주관기관에게 다음의 지원금을 지급한다.
- 지원금 : 180,000,000원
- ※ 지원금 지급은 2회 분할하여 1차 50%(협약 시), 2차 50%(2017. 9월 경) 지급한다.
- ② SBA는 주관기관에게 사업의 규모, 착수시기, 재정사정, 민간부담현금 입금현황 등에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지원금을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주관기관은 사업비 중 제1항의 지원금 이외의 민간부담현금을 부담할 경우 해당 현금을 다음과 같이 출자하여야 하며, 민간부담현금 전액을 사업비통장에 입금하고 주관기관은 그 사본을 (전담기관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민간부담현금 : 0원
- ④ (전담기관)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금의 지급시기·방법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- 가.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
  - 나. SBA의 재정사정,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
  - 다.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
  - 라. (전담기관) 또는 (전담기관)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
  - 마. 주관기관이 제3항에 의한 민간부담현금 입금 확인서류를 협약체결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 - 바. 기타 (전담기관)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(이하 “불가항력의 사유”라 한다)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
- ⑤ 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제1조의 사업 목표 및 내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·출금하여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, 지급,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## **제6조(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)**

- ①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해 총괄적인 정산 실시의 책임을 지고 '사업비 정산'을 하며 (전담기관)이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보고서의 결과를 (전담기관)에게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(전담기관)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표본조사,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주관기관은 (전담기관) 또는 (전담기관)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③ 주관기관은 '서울시지분액 반납'에 의거하여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약금(불인정금액의 10%)을 포함한 서울시지분액을 (전담기관)에게 납부해야 한다.

## **제7조(사업의 결과보고)**

- ①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등을 (전담기관)이 정하는 기한 내에 (전담기관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(전담기관)은 사업의 수행현황 및 성과활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## **제8조(사업의 평가 및 결과조치)**

- ① (전담기관)은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시평가, 최종평가, 현장실태조사 등 사업 제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를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- ② (전담기관)은 사업별로 제시된 성과목표 달성을여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한다.
- ③ (전담기관)은 평가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'관리규정 표2. 제재 및 환수 기준'에 따른다.
- ④ (전담기관)은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에 대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**제9조(사업결과의 활용 및 활용보고)**

- ① (전담기관)은 '관리규정 제44조(사업결과의 활용)'에 의거하여 사업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주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여야 한다.
- ②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(전담기관)이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## **제10조(협약의 변경)**

- ① (전담기관)과 주관기관은 '관리규정 제26조(협약의 변경)'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주관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'관리규정 제26조(협약의 변경)'에 의거하여 (전담기관)에게 보고 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(전담기관)은 SBA의 예산 사정, 평가결과, 관리규정의 개정,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

## **제11조(협약의 해약, 제재 및 환수)**

- ① (전담기관)은 관리규정에서 정한 협약의 해약, 제재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의 본 협약을 해약 또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에의 참여제한, 지원금의 환수 등 관리규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② 협약의 해약,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'관리규정 제27조(협약의 해약) 및 관리규정 <표2>'에서

정한 바에 따른다.

- ③ (전담기관)은 제8조에 의거하여 사업평가 결과 주관기관의 사업수행에 대해 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- ④ 주관기관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금 받은 지원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(전담기관)에 자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, (전담기관)의 정산 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(전담기관)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(전담기관)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(사업에 따른 유·무형적 결과물의 소유)

- ①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기자재·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.
- ② 지식재산권·연구보고서 등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.
- ③ (전담기관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결과물을 (전담기관)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.
  - 가. 사업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- 나. 그 밖에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주관기관은 개발 성과의 간행물 계재,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(전담기관)의 동 지원사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⑤ 주관기관은 사업의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·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
  - 가.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증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(전담기관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나. 지식재산권을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'서울산업진흥원(서울특별시), 스타트업-인재 매칭 지원사업, 수행과제명, 주관기관명, 수행기간; 등의 기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상기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결과물 중 당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주관기관은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.

#### 제13조(관련규정의 준수)

- ① 주관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규정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협약체결 후 관리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(전담기관)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 10조 3항에 의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,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.
- ③ 성과물의 귀속·유지·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르며, 관련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정하거나 또는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한 바를 따른다.

#### 제14조(협약의 효력)

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#### 제15조(기타)

- ① 본 협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의 결과를 공개,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「스타트업-인재 매칭 지원사업」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.
- ②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리규정 등 관계규정은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.

- ③ 본 협약서(첨부 포함)는 작성하여 (전담기관)과 주관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- ④ 주관기관은 (전담기관)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가 사업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가 관리규정에 위배되게 산정되었거나 부당·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(전담기관)은 부당 또는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기관은 지체 없이 (전담기관)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#### 제16조(해석)

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서의 해석 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(전담기관)의 해석에 의한다.

2017년 4월 1일

전담기관

서울산업진흥원

전담기관장

주형철



주관기관

오이씨랩 주식회사

주관기관장

장영화



과제책임자

장영화

